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 2016.4.26.]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4.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의 제명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을 행정협업으로 규정하며, 각 행정기관마다 행정협업을 총괄하는 협업책임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점검 및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에 대한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협업성고가 우수한 행정기관과 협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융합행정을 행정협업으로 용어 정비(제41조,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행정기관 상호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장비 및 정보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식의 행정을 "융합행정"에서 "행정협업"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정비함.

나.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및 추가 발굴(제42조 및 제43조 신설)

1)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행정협업과제를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협조하도록 함.

2)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장이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외에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학회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다. 행정기관 간 이견에 대한 협의 지원(제44조제4항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협업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협업책임관 신설(제46조 신설)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협업책임관으로 임명하고, 그 사실을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마. 행정협업우수기관 포상 등(제46조의8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성고가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홍보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4월 2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대통령령 제27103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 중 "도모"를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으로 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업무의 협조"를 "행정협업의 촉진"으로 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2조를 제3장제2절의 제46조의2로 하고,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행정협업과제의 등록)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발굴한 과제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등록하려는 행정협업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행정협업과제의 주관부서 및 과제담당자와 협업부서 및 담당자
2. 행정협업과제와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의 단위과제
3. 행정협업과제의 이력, 내용 및 취지
4.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3조를 제3장제2절의 제46조의3으로 하고, 제3장제1절에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행정협업과제의 추가 발굴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외의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협업과제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국민, 공공기관, 민간 기업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행정협업의 수요,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행정기관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고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2. 행정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비용 또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사업
3. 행정기관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아 이견에 대한 협의·조정이 필요한 정책 또는 사업
4. 그 밖에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행정협업과제 발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회 등 연구단체, 전문기관 또는 민간 기업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발굴된 행정협업과제를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행정협업과제를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행정협업과제의 등록 사항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3조 다음의 "제2절 융합행정의 촉진"을 삭제한다.

제44조를 제3장제1절의 제41조로 하고, 제41조(중전의 제44조)의 제목 "(융합행정의 촉진)"을 "(행정협업의 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다른 기관"을 "다른 행정기관"으로, "해당 기관"을 "해당 행정기관"으로, "행정(이하 "융합행정"이라 한다)을 구현"을 "행정기관 간 협업(이하 "행정협업"이라 한다)을 촉진"으로, "융합행정과제"를 "행정협업과제"로, "발굴하여 수행하도록 노력"을 "발굴"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융합행정"을 "행정협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발굴한 행정협업과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협업과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다수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2.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업무
3.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인가·승인 등을 거쳐야 하는 업무
4.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유 또는 제46조의4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의 상호 연계나 통합이 필요한 업무
5. 그 밖에 다른 행정기관의 협의·동의 및 의견조회 등이 필요한 업무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행정협업의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의2를 제3장제1절의 제46조의4로 하고, 제46조의4(중전의 제44조의2)제1항 중 "융합행정과제"를 각각 "행정협업과제"로, "기관 간"을 "행정기관 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 행정기관"을 "행정협업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련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4조의3을 제3장제1절의 제46조의5로 하고, 제46조의5(중전의 제44조의3)의 제목 "(협업조직의 설치)"를 "(행정협업조직의 설치)"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협업조직"을 각각 "행정협업조직"으로 한다.

제45조 중 "융합행정과제"를 각각 "행정협업과제"로, "관계 기관"을 "관련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46조를 제44조로 하고, 제44조(중전의 제46조)의 제목 "(융합행정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을 "(행정협업과제의 점검·관리 및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융합행정과제"를 "행정협업과제"로, "관계 기관"을 "관련 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 기관"을 "그 행정기관"으로, "융합행정과제"를 "행정협업과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행정협업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과제의 발굴 및 수행 과정에서 관련 행정기관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제46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관련 행정기관의 협업책임관 간의 회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협업책임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협업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협업책임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과제 발굴 및 수행의 총괄
2.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의 다른 행정기관과의 연계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총괄 관리
3.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 촉진을 위한 행정업무 절차, 관련 제도 등의 정비·개선

4.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협업과제 수행과 관련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5. 그 밖에 행정협업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업책임관을 임명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협업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중전의 제42조)의 제목 "(전자적 협업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행정협업시스템의 구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1조에 따른 기관 간 업무협조가"를 "행정협업이"로, "협업시스템"을 "행정협업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업시스템"을 "행정협업시스템"으로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협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행정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협업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관련문서 등을 행정협업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행정협업시스템을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3(중전의 제43조)의 제목 "(협업시스템의 활용 촉진)"을 "(행정협업시스템의 활용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협업시스템"을 각각 "행정협업시스템"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46조의6부터 제4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6(행정협업 관련 시설 등의 확보) 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시설·공간·설비 등을 마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2조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한 시설이 행정협업 관련 시설로 활용되거나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의7(행정협업문화의 조성 및 국제협력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행정협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정협업 우수사례의 발굴·포상 및 홍보
2.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 등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
3.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4.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콘텐츠의 개발·보급
5. 행정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6. 그 밖에 행정협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의 참고사례 발굴 및 우수사례의 전파,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류, 관련 전문기술의 확보 등을 위하여 국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6조의8(행정협업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협업성적이 우수한 행정기관을 선정하여 포상 또는 홍보할 수 있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협업에 이바지한 공로가 뚜렷한 공무원 등을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연구모임에 관한 사항
- 2의3. 지식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방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7호 및 제20조제1항 단서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각각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③ 공증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④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⑥ 제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⑧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후단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⑨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⑩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